

2020년도 제2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0. 14.(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39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선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06건(안건번호 제2020-132927호 ~13342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32927호는 미국곡을 편곡한 2차적저작물인 원곡의 악곡 부분을 무단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안건임. 독립된 저작물인 가사 부분과 달리 악곡 부분은 원곡의 전부를 무단으로 이용하였고 공정이용 사안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 원 저작권자 및 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40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오진해 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3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선임: 제1호 안전에 대한 회의록 5쪽의 민원 내용, 밴드명, 6쪽의 저작물명, 8쪽의 게시자명, 저작물명, 9쪽의 민원 내용, 번역자명, 편집자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1호 안전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선임: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14쪽~3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선임: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후지TV', 'tvN', '미국 HBO', '일본 NHK E 테레', 'TV조선', '일본 NTV', '위너브러더스코리아(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영국 Sky One', 'Netflix', '일본 Tokyo MX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A, C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선임: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40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0-132927호~133426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2927호는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민원인은 "※※※ ※※ ※※를 ※※※※※※ ※※※※ ※※※※※※ ※※※※※※※ ※※※※※※ ※※※※※※※※※※※※"라고 신고하였음.

▲▲▲▲▲ 사용자 '▲ ▲ ▲ ▲'가 민원인의 음원을 무단으로 커버하여 '▲▲ ▲ ▲▲▲▲▲▲'라는 제목으로 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음원의 원곡은 2009년경에 공표한 미국 밴드인 '☆☆☆ ☆☆☆☆'의 '☆☆☆☆☆ ☆☆☆ ☆☆☆☆☆'이며, 우리나라 가수 '☆☆(▲▲▲▲▲)'가 편곡 및 한국어 가사를 붙여 음원 '▲▲▲▲'를 발매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음원을 들려주면서)▲▲▲▲▲는 오디오스트리밍 플랫폼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음원을 총 4분 13초를 제공하고 있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음원을 들려주면서)가수 '☆☆'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 '☆☆'에서 음원을 총 4분 14초를 제공하고 있음. 음원을 듣기 위해서는 유료 광고를 시청해야함. 해당 음원이 게시된 날짜는 2018. 4. 11.자이고, 최초 발표일자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보다 이른 것으로 추정됨. 게시물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원곡인 '☆☆☆☆☆ ☆☆☆ ☆☆☆☆☆' 권리자의 Content ID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A 위원: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김☆☆'인지?

- 오진해 선임: 그러한 것으로 추정됨. (원곡이 게시된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음원을 들려주면서)원곡은 총 4분 4초를 제공하고 있음. '☆☆'의 저작물은 멜론 등 음원사이트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으나, 네이버 바이브의 '뮤지션리그'에서 무료로 스트리밍 제공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하는 '▲▲'의 '☆☆☆☆☆☆'와 '☆☆'의 '☆☆☆☆'가 이용하고 있는 음원(MR)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 이에 비하여 가사는 상이함. 해당 가사는 검토보고서에 담겨 있었음.

- A 위원: 해당 음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 오진해 선임: 확인하지 못하였음.

- C 위원: 권리관계를 정리하자면, 원곡은 미국 밴드인 '☆☆☆ ☆☆☆ ☆y'의 '☆☆☆☆☆ ☆☆☆ ☆☆☆☆☆'임. 작사, 작곡, 음원 그리고 실연자의 권리가 모두 있음.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수 '☆☆'가 원작곡을 편곡하고, 가사는 새로운 우리말 가사를 붙인 것으로 파악됨. 아마도 음원은 원곡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롭게 녹음한 것으로 추정됨. 가수 '☆☆'가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편곡을 하거나 원 음반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을 여부는 확인되는지?

- 오진해 선임: 민원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아니함. 사무처에서 편곡된 음원이 게시된 유튜브 게시물에 Content ID가 부착된 것까지 확인함.

- C 위원: Content ID는 수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이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는지는 상관이 없음. '☆☆☆ ☆☆☆☆'가 문제제기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배분되기 때문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 '▲▲'가 커버한 음원이 미국 밴드의 원곡 음원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가수 '☆☆'가 재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인지 확실하지 않음. 만약 우리나라 가수 '☆☆'가 재녹음한 음원을 사용하였다면 미국 밴드 '☆☆☆ ☆☆☆☆'의 레코드 레이블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가수 '☆☆'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도 침해한 것임.

가사의 경우 가수 '☆☆'가 한국어 가사를 창작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작사저작권과 작곡저작권을 별도로 분류함. 만약 '▲▲'의 '☆☆☆☆' 가사가 '☆☆'의 '☆☆☆☆' 가사의 본질을 감득할 수 있으면 2차적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검토보고서상으로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술함.

- 오진해 선임: 그러함.

- C 위원: 만약 '☆☆'가 편곡한 음원이 원곡에 대해서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되었다면, 작곡저작물로서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임.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의 음원을 '▲▲'가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미국 밴드 '☆☆☆ ☆☆☆☆'의 작곡저작권과 한국 편곡자 '☆☆'의 작곡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의 편곡한 음원에 대해서 창작성이 추가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그러한 소명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하지 아니함.

- 오진해 선임: 원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하다고 봄.

- C 위원: 동의함. 적어도 미국 밴드 '☆☆☆ ☆☆☆☆'의 작곡저작권과 사운드 레코딩 라이트(sound recording right)를 침해한 것은 명확함. 최종적인 검토의견은 무엇인지?

- 오진해 선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여 원저작물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음. 원저작물 악곡 부분의 편곡저작자가 직접 신고했으며, 유튜브를 통하여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원저작물에 대하여 별개의 플랫폼에서 별개의 수익 창출을 하고 있어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 A 위원: C 위원님의 말씀처럼 Content ID는 저작권 침해를 대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수익 배분을 받겠다라는 의미임. 그래서 본 위원이 편곡된 음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여부를 물어본 것임. 과거 지오디 '어머님께'의 경우 원 작곡가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현재 권리는 원 작곡가에게 모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민원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자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라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민원인이 권리주장자로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임.

- C 위원: '☆☆'의 한국어 가사를 제외하고 작곡과 음원 부분이 해당

안건의 쟁점사항이라고 생각됨. 음원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밴드 '☆☆☆☆'의 원곡, 원곡을 편곡한 음원, 그리고 '▲▲'의 음원이 있음. 만약 '☆☆'의 음원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음. 문제는 '☆☆'의 음원이 원곡에 비해서 어떠한 부분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음원을 제작한다는 것은 작사, 작곡을 이용한 것임. 원곡의 작곡자의 레코드 레이블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만약 새롭게 녹음한 것이면, 원곡의 작곡가의 권리를 침해한 것임. 최종 정리하자면 '▲▲'가 우리나라 가수 '☆☆'의 음원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였다면 '☆☆'의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가 원곡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녹음하였다면 그 자체는 불법임. 편곡한 부분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아니하고, 작은 변형만 이뤄졌다면 복제품에 불과하다고 생각됨. 종합해보면, '▲▲'는 미국 원곡의 저작권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명확함. 음원을 '☆☆'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면 '☆☆'의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A 위원: 오히려 '▲▲'가 원곡을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보여짐. 미국 밴드의 원곡, '☆☆'의 편곡, '▲▲'의 커버곡을 비교하여 들었을 때 음원의 차이점이 불명확함. 그래서 민원인의 자격이 중요하다고 봄. 민원인인 '☆☆'가 권리주장자로 보기에 어려움. 미국의 원 작곡자가 권리자라고 주장을 해야 함.
- C 위원: A 위원님 말씀 일부 동의함. 그러나 작사가와 작곡가,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별개임. 예를 들어 머라이어 캐리가 '히어로'를 불렀음. 작사가, 작곡가, 유니버설 뮤직은 레코드 레이블이고, 실연자는 머라이어 캐리임. 그런데 작사가, 작곡가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재녹음 금지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작사가, 작곡가가 다른 음반제작사에게 새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그렇다면 유니버설 뮤직의 음원이 있고, 다른 음반제작자가 제작한 음원이 있다면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별개가 됨. 작곡가가 동일하므로 두 개의 음반제작자가 제작한 음원은 비슷할 수 있음. 그렇다면 '☆☆'가 '☆☆☆ ☆☆☆☆'의 음원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거나,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면 새롭게 음원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원곡을 가져다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가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 새롭게 녹음하였다면 해당 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음반제작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창작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는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음. 또한 우리나라 '☆☆'가 새로운 음원을 녹음했다고 전제한다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원 음원과 편곡 사이에 차이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보류함.

- A 위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원곡을 그대로 제작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작곡가 입장에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을 완전히 허락해준 것은 아니고, 수익만 배분 받겠다고 한 것임. 민원인인 '☆☆'가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최소한 저작물 자체가 본인의 것이어야 함. 2차적저작물로 인정이 된다하더

라도 최대 20%까지 권리가 인정되고 나머지는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봄.

- C 위원: 편곡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없다는 의견이신지?
- A 위원: 그러함.
- C 위원: 그럼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 A 위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레코딩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가 가짐. 우리나라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지 않아 음반제작자의 권리로 접근하기는 미흡하다고 봄.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로 접근하는 것이 더 심플하다고 생각됨.
- C 위원: 그렇다면 A 위원님의 최종 의견은 무엇인지?
- A 위원: 원곡의 작곡가가, 음반제작자 등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어 다고 주장한다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지만, 민원인인 '☆☆'는 저작권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권리주장자 부적격으로 부결 의견임.
- C 위원: 그렇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작성자 '▲▲'가 미국 원곡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작성자 '▲▲'가 원곡의 작곡가,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함.

- C 위원: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가수 '☆☆'에게 해당 음원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의 권리 침해에 기반한 시정권고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원곡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함.

- A 위원: 동의함.

- C 위원: 그렇다면 미국 원곡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에 기반한 시정권고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A 위원: 민원인 신고에 대해서는 부적합하고, 만약에 원 권리자가 신고를 하면 적합하다고 보지 않았는지?

- C 위원: 그동안 권리가 없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였을 때 시정권고 조치하였는지?

- 사무처 정성희 처장: 심의를 할 때 민원인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심의의 기준이 아님. 제3자에 의한 신고도 모두 받고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도 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안했는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작은지 등을 보고 있음. 만약 해당 안전에 대해서 원곡의 저작권자 또는 '☆☆' 또는 제3자 중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

- A 위원: 음원이 게시된 유튜브 게시물에 Content ID를 부착하여 수

익만 배분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원곡의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나의 음원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게 본다면 원곡의 저작권자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음원을 가져다가 또 다른 가사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추정 가능함.

- 오진해 선임: ▲▲▲▲▲의 경우 유튜브와 달리 Content ID와 같은 시스템이 없음. 그런 경우, ▲▲▲▲▲에 게시된 것은 유튜브에 '☆☆'가 게시한 음원과 다르게 저작권 침해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함.

- B 위원: 음반권 설정 등은 별론으로 하고,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과거 '▲▲'는 2017. 3. 3.에 '☆☆'의 '☆☆☆☆' 커버를 유튜브에 게시하였다가 '☆☆'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유튜브에 의하여 게시중단되었던 경우가 있음. 당시의 가사는 가수 '☆☆☆☆'의 '▲▲▲▲ ▲▲▲ ▲▲▲▲' 가사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작사는 '▲▲▲▲' 노래 가사를 이용하고, 작곡은 외국곡을 가져다 조합하여 새로운 노래를 제작하였음. '▲▲▲▲' 등 저작권자에게 허락 받지 않았다고 보여짐.

- 최승수 분과위원장: 해당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여짐.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3292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민원인이 편곡하고 음원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 불명확하고, 음원도 원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녹음으로 볼 정도의 것인지 불명확하지만, 원 저작권자 및 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민원인도 미국곡을 편곡하여 음원을 제작한 상태이며, Content ID를 통하여 수익창출 모델로 원곡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2차저작물 작성을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러한 상태에서 타인이 유사한 곡을 이용하여 다른 가사를 붙인 곡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자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제3자도 가능하므로 저작권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저작권 침해 신고라고 본다면, 해당 사건은 독립된 저작물인 가사 부분과 달리 악곡 부분은 원곡의 전부를 무단으로 이용하였고 공정이용 사안으로도 볼 수 없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며,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32927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선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132928호~13342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2928호는 음악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20 포인트에 mp3 파일로 판매중임. 2017. 1. 7. 발매하였으며, tvN 드라마 '도깨비' OST임. 가수는 에일리이며, 2020. 10. 12. 기준 멜론 차트 179위임.

(방송 '닥터 후'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3007호는 방송 '닥터 후'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190 포인트에 판매중임. 영국드라마 닥터후 시즌 12의 1화, 2화를 avi 파일로 제공함. 방영기간은 2020. 1. 1.부터 3. 1.까지 총 10화가 방영됨. 저작권사는 '영국 BBC one'이며, 조디 휘테커, 블래들리 월시, 토신 콜 등이 출연함.

(방송 '설국열차'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3139호는 방송 '설국열차'임. 모바일 웹하드에서 330 포인트에 판매중임. 미국드라마 설국열차 시즌 1의 1화~10화를 mp4 파일로 제공함. 방영기간은 2020. 5. 17.부터 7. 12.까지 총 10화가 방영됨. 저작권사는 '미국 TNT'이며, 제니퍼 코넬리, 다비드 디그스, 앨리슨 라이트 등이 출연함. 넷플릭스 등에서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32928호~13342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B,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32928호~133426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2928호~13342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2927호~13342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4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2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박정인